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143

제출년월일 : 2000.

제출자 : 영주시장

### 1. 개정이유

여러부서에 분산수행 하여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히고자 행정기구설치 및 분장사무를 조정 및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과 개편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부시장직속 종합민원처리과
- 산업건설국 주택과 ⇒ 산업건설국 주택지적과

#### 나. 사무분장 조정

- 행정지원국 ⇒ 산업건설국
  -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 개별필지의 지가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공간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국 ⇒ 부시장 직속 (종합민원처리과)
  - 징집, 소집 및 예비군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재증명 및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 호적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개편기구표 1부

나. 종합민원처리과 담당별 주요업무 내용 1부

다. 인·허가과 전담기구설치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 협의 공문 [(도행정 12200-404(2000. 8. 31)] 사본 1부

라. 영주시 기구·정원조정 협의 공문 [도행정 12200-11457(2000. 10. 6)] 사본 1부

마.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행정자치부) 사본 1부

##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중 “보좌기관”을 “보조·보좌기관”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정보통신 담당관실을”를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종합민원처리과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민원봉사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9호, 제13호, 제14호 및 제20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27호중 “부녀”를 “여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주택과”를 “주택지적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29호중 “건축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련 인·허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항 제31호를 제35호로 하고, 제31호 내지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1.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 32. 개별필지의 지가관리에 관한 사항
- 33. 도시공간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 34.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종합민원처리과”로 한다.
2. 영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2】 위임사무(권한위임)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주택과”를 “주택지적과”로 한다.

3. 영주시 세조례 제9조 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주택지적과장”으로 한다.
4. 영주시 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5. 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시마을과장”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u>보좌기관</u>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u>정보통신담당관실</u> 을 둔다.	제4조(..... <u>보조·보좌기관</u> ...) ..... <u>정보통신담당관실 및 종합민원처리과를</u> .....
제5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세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u>민원봉사과</u> ,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를 둔다. ②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생 략> 9. <u>집집, 소집 및 예비군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u> 10.~12. <생 략> 13. <u>도시공간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u> 14. <u>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15.~19. <생 략> 20. <u>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u> 21. <u>제증명 및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u> 22. <u>호적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u> 23. <u>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u> 24. <u>개별필지의 지가관리에 관한 사항</u> 25.~26. <생 략> 27. <u>가정·아동·노인·부녀·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u> 28.~32. <생 략>	제5조(행정지원국) ①..... .....<삭 제>..... ②..... 1.~8. <현행과 같음> 9. <삭 제>  10.~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삭 제> 15.~19. <현행과 같음>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24. <삭 제> 25.~26. <현행과 같음> 27. ..... <u>여성</u> .....  28.~32. <현행과 같음>
제6조(산업건설국) ①산업건설국에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를 둔다. ②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산업건설국) ①..... ..... <u>주택지적과</u> ..... ②.....

현 행	개 정 안
1. ~28. <생 략>	1. ~28. <현행과 같음>
29. 주거환경개선사업, <u>건축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u>	29. ..... <u>건축관련 인·허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
30. <생 략>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30. <현행과 같음> 31. <u>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u> 32. <u>개별필지의 지가관리에 관한 사항</u> 33. <u>도시공간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u> 34. <u>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35. ....
31.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신·구조문 대비표

### 【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총무위원회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u>정보통신담당관실</u> 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다. <생 략> 3.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 가. ..... <u>정보통신담당관실</u> 및 <u>종합민원처리과</u> ..... 나.~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 토지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lt;생략&gt;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④~⑤ &lt;생략&gt;</p>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lt;현행과 같음&gt;            ③.....  <u>산업건설국장</u>.....            .....            ④~⑤ &lt;현행과 같음&gt;</p>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간사등) ① &lt;생략&gt;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④ &lt;생략&gt;</p>	<p>제2조(간사등) ① &lt;현행과 같음&gt;            ②.....<u>새마을과장</u>.....            .....            ③~④ &lt;현행과 같음&gt;</p>

## 개 편 기 구 표

○ 現行 : 本廳 2局 2擔當官 14課 72擔當

행정지원국										산업건설국					
기획감사담당과	정복통신담당과	총무과	세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정책·기획 예산·감사 법무·법무 임자·유치	공보·전산·통신·기록 정책·기록 전산·기록	총무·시정·인사·교류협력 시정·인사·교류협력	세마을·개발·농지경·청소·청년·민방위 개발·농지경·청소·청년·민방위	세무·세금·세외입금·세무조사 세금·세외입금·세무조사	회계·재산관리 재산관리	민원·호적·병무·부동·관리·지적·지가회 호적·병무·부동·관리·지적·지가회	사회·위생·의료·복지·가정·복지 의료·복지·가정·복지	문화·관광·문화재·시설 관광·문화재·시설	산업·농사·농업·유동·이상작 농사·농업·유동·이상작	지역·경제·상정·공업·에너지·관리 경제·상정·공업·에너지·관리	환경·환경·화기·폐기물·온수리 환경·화기·폐기물·온수리	산림·환경·사립로·축산·유동 환경·사립로·축산·유동	건설·환경·토목·도시계획·도시계획 환경·토목·도시계획·도시계획	도시·교통·도시계획·도시계획 교통·도시계획	주택·건축·건축·지도 건축·지도
5	4	4	5	5	3	6	5	5	4	5	4	4	6	4	3

○ 調整 : 本廳 2局 2擔當官 14課 72擔當

행정지원국										산업건설국					
기획감사담당과	정복통신담당과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세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지적과
정책·기획 예산·감사 법무·법무 임자·유치	공보·전산·통신·기록 정책·기록 전산·기록	일반·호적·병무·부동·환경·유동 기록·환경·유동	총무·시정·인사·교류협력 시정·인사·교류협력	세마을·청소·민방위·체육 청소·민방위·체육	도예·세금·세외입금·세무조사 세금·세외입금·세무조사	사회·위생·의료·복지·가정·복지 의료·복지·가정·복지	문화·관광·문화재·시설 관광·문화재·시설	산업·농사·농업·유동·이상작 농사·농업·유동·이상작	지역·경제·공업·에너지·관리 경제·공업·에너지·관리	환경·환경·화기·폐기물·온수리 환경·화기·폐기물·온수리	산림·환경·사립로·축산·유동 환경·사립로·축산·유동	건설·환경·토목·도시계획·도시계획 환경·토목·도시계획·도시계획	도시·교통·도시계획·도시계획 교통·도시계획	주택·건축·지적·지적·지가관리·지적·민원 건축·지적·지가관리·지적·민원	
5	4	6	4	4	5	3	5	4	4	4	4	5	6	4	5

## ○ 改編機構 内譯

### ○ 과 개편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부시장직속 종합민원처리과
- 산업건설국 주택과 ⇒ 산업건설국 주택지적과

### ○ 담당 개편

#### · 통폐합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상정담당 ⇒ 지역경제담당
- 새마을과 새마을담당+개발담당 ⇒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 · 소속 및 명칭변경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
- 주택과 건축담당 ⇒ 종합민원처리과 건축공장민원담당
- 사회복지과 부녀복지담당 ⇒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 · 복서조정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주택지적과 지적담당
- 민원봉사과 지가관리담당 ⇒ 주택지적과 지가관리담당
-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 새마을과 체육지원담당
- 새마을과 녹지조경담당 ⇒ 산림축산과 녹지조경담당

#### · 신설

- 종합민원처리과 농립민원담당
- 종합민원처리과 위생환경민원담당

## 종합민원처리과 담당별 주요업무 내용

###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 민원행정추진
- 민원1회 방문
- 차량등록

### ○ 종합민원처리과 호적담당

- 호적전산화
- 호적편제
- 호적 제증명

### ○ 종합민원처리과 병무담당

- 병력동원
- 현역입영
- 소집자원 복무관리

### ○ 종합민원처리과 건축공장민원담당

-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승인
- 공장등록 및 설립 승인

### ○ 종합민원처리과 농림민원담당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보전임지전용허가

### ○ 종합민원처리과 위생환경민원담당

- 식품위생 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신고)

- 경수세계문화엑스포 2000 -  
“어우르자 세계문화 꽂피우자 한국문화”

## 경상북도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 전화 950-3326 / 전송 950-2548  
자치행정과, 과장 김대성 사무관 김영수, 담당자 조남원

문서번호 행정 12200 - 404

시행일자 2000. 8. 31

공개여부 공개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총무과장

선 람	시 장	7/11/04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0. 9. 01	결 재
	번호	5276	국 장
	처리과	총무과	· 과 장
	담당자	서경호	공 동 체 계 장
	심사자		람 체 계 장
			심사일

제 목 : 인·허가과 전담기구설치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 협의

1. 영주시 총무 12200-1276(2000. 8. 28)호, 군위군 총무 12200-2176(2000. 8. 29)호, 청송군 총무 12200-1861(2000. 8. 28)호, 성주군 총무 12200-2211(2000. 8. 29)호, 울진군 총무 12200-1150(2000. 8. 26)호, 을릉군 총무 12200-2233(2000. 8. 30)호 관련임

2. 위 호에 의거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불임과 같이 협의하오니 자치법규 등을 조기에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구·정원 협의서 각 1부. 끝.

경상북도지

전결 자치행정국장 황성길



수신처 : 영주시장, 군위군수, 청송군수, 성주군수, 울진군수, 을릉군수

## 협의사항(영주시)

요구 내용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국 2담당관 14과(변동 없음)</li> <li>· 課 개편(부시장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봉사과 ⇒ 종합민원처리과(6담당)</li> <li>- 주택과 ⇒ 주택지적과</li> </ul> </li> <li>· 擔當 개편(증 1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설 : 종합민원처리과 농립민원담당 위생환경민원담당</li> <li>- 통폐합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상정담당</li> <li>⇒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li> </ul> </li> <li>- 부서조정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li> <li>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li> <li>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li> <li>주택과 건축담당 ⇒</li> <li>종합민원처리과 건축공장민원담당</li> <li>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주택지적과</li> <li>민원봉사과 지가관리담당 ⇒ 주택지적과</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대로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5명 ⇒ 935명(변동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민원처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42명 ⇒ 33명(<math>\Delta</math> 9)</li> </ul> </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대로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민원처리과장( 행정+지적5급 ⇒ 행정5급)</li> <li>· 주택지적과장( 행정+건축5급 ⇒ 행정+건축+지적5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대로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대로 협의함</li> </ul>



(제50회 - 총무 제1차)

"위대한 경북 함께 묵는 3002"

## 경상북도

770-8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3326 /FAX (053)950-2548  
서장관성과 대장 김대성 서무관 김영수 담당자 조남원

주소번호 12200-11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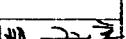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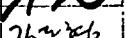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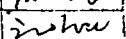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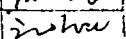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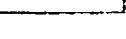
생애일자 2000.10.06 (10년)

공개여부 공개

(성명)

이름 영주시장

직위 총무과장

신 령	시 작	2000.10.06	지 시
접 수	일 자	2000.10.07	결 재
접 수	접 시간		부서장  국장 
	번호	5731	국장  기록 
처리과	처 리 과	총무과	공 과 장  기록 
문 서 일 자	문 서 일 자	2000.10.06	기록  기록 
심사자			심사일

부서: 영주시 기구·첨원조정 협의

1. 영주시 총무 12200-1411(2000.9.30)호와 관련의
2. 위호에 의거 재출판 영주시의 업무의 효율화와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  
장과 협의안을 본임과 같이 협의하니 차치법규 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가의 성과를 거양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기구·첨원 협의서 1호. 2호

경상북도지



# 협의사항

(영주시)

요구 내용	협의 내용
○ 기구 조정 · 2국 16과 (변동 없음) ⇒ 73당당 + 72집당, 111당당	○ 원안대로 협의함
- 통폐합 새마을과 새마을당당 → 새마을 당당	
- 부서조정 문화관광과 체육시원담당 ⇒ 새마을과 체육지원담당	
새마을과 농지조경담당 ⇒ 신린축산과 농지조경담당	
○ 경원 조정 · 935명 ⇒ 935명(변동없음)	○ 원안대로 협의함
○ 기타사항	○ 원안대로 협의함

# 市·郡·區의 認·許可 專擔機構設置 推進指針

2000. 3. 22 대통령님께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계획 보고서 보고된 『고객중심으로  
민원혁신 관련사항중 자치단체의 인·허가업무  
창구일원화를 위한 허가과설치 추진』을 위한  
시행지침임

行政自治部

## 目 次

I. 推進背景-----	1
II. 市·郡·區 專擔機構 設置方案-----	2
III. 機構設置와 關聯한 措置事項-----	5
IV. 行政事項-----	6

## 市·郡·區의 認·許可 專擔機構設置 推進指針

### < 그간의 추진경위 >

- '98. 10. 13 김포시의 허가과 설치, 경영혁신 우수사례 평가
- 2000. 3. 22 우리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허가과』 설치계획 보고
- 2000. 4. 4 복합민원처리제도 개선방안 시달

### I. 推進背景

- 지금까지 민원1회방문처리·민원창구 일원화 등 복합민원처리 제도의 개선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기대에 못미침
  - 인·허가부서 공무원의 창구일원화에 대한 반대 및 기관장의 소극적 추진의지 등으로 인해 성과 미흡
- 지방자치가 본격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 체제를 고객중심의 『민본위』로의 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 절실
  - 여러 부서에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
- 복합민원기능을 1개의 기구(사무실)에서 모두 해결처리 하므로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서비스 구현
  - 민원인과 인·허가 담당공무원간의 유착가능성 해소 및 나아가 민원처리의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 재고
  - ⇒ 김포시가 수범운영중인 『허가과』 운영모델을 전 지방자치 단체에 벤치마킹하여 개혁과제로 추진 필요

## II. 市·郡·區 專擔機構設置 方案

### <기본방향>

- 각 자치단체의 복합민원 등 민원수요와 조직운용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담기구 설치 추진
- 구조조정 등 감축관리현실을 감안 기구·인력 자체조정 설치  
⇒ 2000년 하반기까지 민원one-stop처리체제 완비

#### 1. 機構設置 基本原則

-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위생·주택 관련기능 등 핵심적인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 전담기구 설치
  - 인·허가 민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연계체제 유지
    - 민원부서는 인·허가처리업무만 수행
    - 사업부서는 정책수립·기획·사후관리기능
- 전담기구(과)의 설치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인 기구조정
  - 전담기구의 명칭은 주민편의 등 고려 전국적으로 통일하되
  - 운영방법·절차 등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자율성 부여
- 전담기구(과)는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정수 범위 이내에서 기존의 다른과의 통폐합을 통해 설치
  - 전담과 복합민원이관에 따라 기존부서 업무량이 대폭 축소 되는 부서의 기구를 대상으로 우선 통폐합 검토
  - 인구 50만이상 시의 본청이외 일반구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설치하되 민원수요량이 적은 경우 6급팀만 설치
- 전담기구(과)에 배치하는 인력은 현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조정 추진원칙, 단 직급별 기준이내에서 부분적 정원 상계조정 인정
  - 6급 팀장 정원의 경우 기존의 6급 무보직의 정원을 조정가능
  - 정원의 상계조정을 통해 6급 정원의 신규책정이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간의 6급 정원수(비율)의 균형을 크게 저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 인정(이 경우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

## 2. 機構設置 類型

**유형 1** : 복합민원 전담처리과 별도 신설(인·허가민원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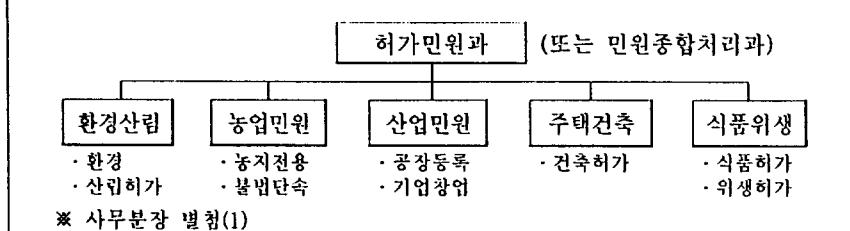
### □ 설치대상 자치단체

- 복합민원이 많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 인구 20만이상 일반시
- 50만이상 시의 경우 인허가 업무를 구로 이관시 해당 일반구
- 도시개발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 군

### □ 기구인력조정 방침

- 기 구 : 과장 밑에 3~5담당(6급팀장)
- 정원규모 : 12~20명
  - 민원수요량을 고려 팀별로 3~7명 배분
- 과의 명칭 : 허가민원과 또는 민원종합처리과, 원스톱민원과
- 과장의 직렬 책정 : 하부기능을 고려 설정에 맞게 조정

### <조직설치표준안>



**유형 2** : 기존 종합민원실을 개편(일반민원 + 인·허가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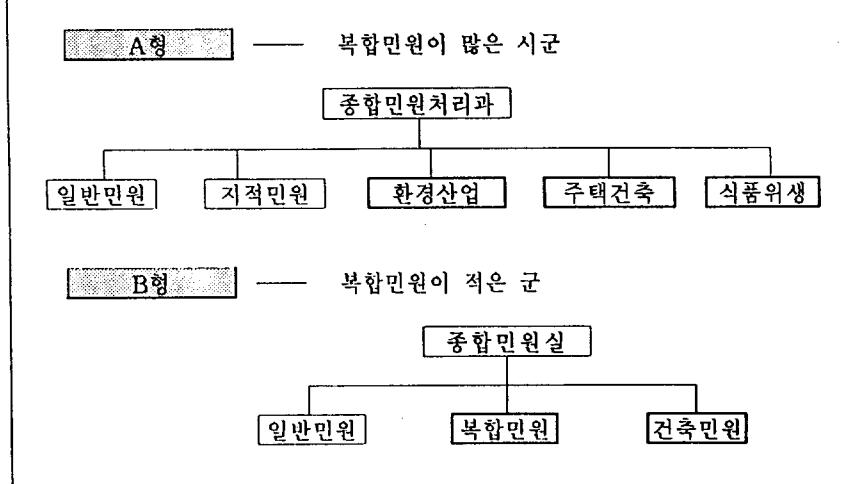
□ 설치대상 자치단체

- 복합민원 또는 인허가 민원이 적은 인구20만미만 일반시
  - 인허가 민원이 적은 그 밖의 군
- ※ 과의 정수운영에 여유가 있는 시·군은 **유형 1**의 별도과 설치가능

□ 기구인력조정 방침

- 기구 : 일반민원 1~2팀, 인허가 2~4팀이내
- 정원규모 : 실정에 맞게 25명이내 책정
- 과의 명칭 : 종합민원처리과 또는 종합민원실
- 과장의 직렬 책정 : 하부기능을 고려 실정에 맞게 복수직화

<조직설치표준안>



### III. 機構設置와 關聯한 措置事項

#### 1. 事務室 確保 및 豫算編成

- 기존 종합민원실을 확대개편하여 사무실확장이 곤란한 경우  
별관체제 운영
- 종합민원처리과(허가민원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사무실 재배치로 면적 확보
-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 예산에 필히 반영

#### 2. 職務教育 및 住民弘報 實施

- 직무교육의 사전 실시
  - 직원인사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 기존 담당공무원 우선배치
  - 자체직무교육 또는 도단위 교육계획 수립
- ※ 공무원교육원과 협조 「인·허가교육과정」 신설
- 對國民 사전홍보 실시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 對國민홍보계획 수립,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처
  - 반상회, 시군소식지, 지역유선방송 등 각종매체의 적극활용

#### 3. 制度改善 등 問題點 補完事項

- 공무원의 전문성·기술성 확보
  - 책임자인 담당과장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인·허가사무처리 관련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의 배치 및 전보제한
  -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처우상의 우대

○ 자치단체장의 실천의지와 공무원 인식전환

- 허가권 이관에 따른 기존부서 기술직공무원의 협조
- 부서이기주의적 기득권 포기 등 발상전환
-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의지 및 뒷받침
- 주민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의 투명성 등 과정공개

○ 외부의 행정감사 억제 · 인센티브제 실시 등 제도보완

- 담당과장에게 최종 결재권 부여를 위한 위임전결규정 개정
- 인 · 허가 단속업무는 기존사업부서에서 집행
- 인 · 허가 전담과에 대한 상부기관의 감사 억제
- 집중된 담당과장의 업무를 기능별 담당팀장에게 결정권 부여
- 인 · 허가 전담기구를 적극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IV. 行政事項

○ 시 · 군 · 구별 복합민원전담부서 설치결과 제출(서식 : 별첨)

- 2000. 8월 말까지 시 · 도가 종합보고

○ 기능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 협의 : 7월 말

※ 2000년 2차년도 구조조정관련 직급별 정원규칙개정 사항과  
구분 별도 규칙개정 추진

## 분야별 추진일정

분야별	주요 조치사항	추진기관	일정시한
1. 기구인력조정	○ 자체조직개편안 확정	해당단체	2000. 7월 말
	○ 조례규칙개정완료	해당단체	2000. 8월 말
2. 인사·예산조치	○ 사무실확보	해당단체	2000. 7월 말
	○ 예산재편성	해당단체	추경결정시
3. 홍보 및 업무개시	○ 직원인사	해당단체	2000. 9월 말
	※ 공무원교육원 종합교육 또는 자체직원교육	시도 해당단체	2000. 9월 말
4. 확인점검평가	○ 주민홍보	해당단체	2000. 8~9월
	○ 업무개시	해당단체	2000. 10월
	○ 확인점검	행정자치부 및 시도	2000. 10~11월
	○ 평가	행정자치부 및 시도	2000. 12월 중

## 【 별첨1 】

담당별 사무분장모델(예시)

담당별	주 기 능	분 장 사 무
환경산림 민원담당 (허가1담당)	· 환경, 산림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설치 업소 관련 업무</li> <li>· 1㏊미만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li> <li>·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협의</li> </ul>
농업민원 담당 (허가2담당)	· 농업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li> <li>· 농지불법 단속에 관한 사항</li> <li>· 농지증명발급 및 조성비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li> <li>· 농지이용실태 및 진흥지역관리</li> </ul>
산업민원 담당 (허가3담당)	· 산업, 공장설치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 및 공업배치</li> <li>· 공장등록 및 설립</li> <li>· 중소기업 창업지원</li> <li>· 무등록 및 조건부공장 관리</li> </ul>
건축민원 담당 (허가4담당)	· 주택건축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li> <li>· 건축행정진실화 추진 및 건축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li> </ul>
식품위생 민원담당 (허가5담당)	· 식품위생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허가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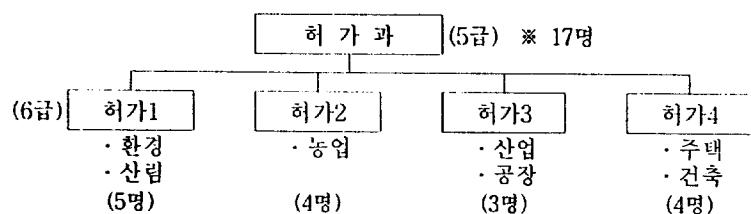
## 【별첨2】

### 시군구 복합민원조직 설치운용 수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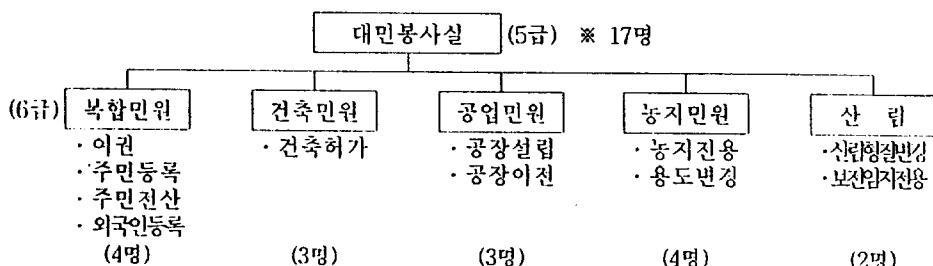
자체의 조직개편을 통해 인·허가 및 복합민원업무의 One-stop처리를 수렴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다음 자치단체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하는데 참고하기 바람

#### <사례1> 인허가전담과 설치, 복합민원의 원스톱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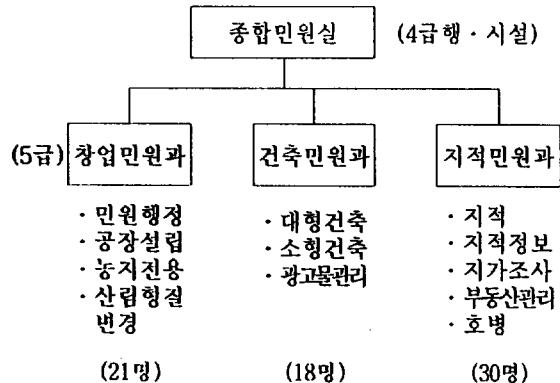
##### ①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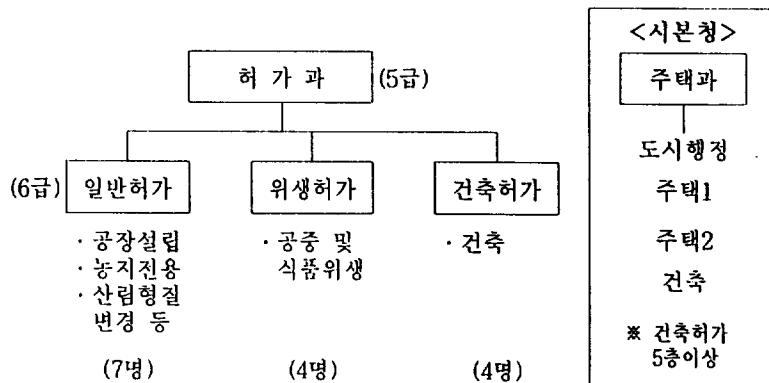
##### ② 이천시



**<사례2> 1개 실국내에서 인허가민원 원스톱처리(김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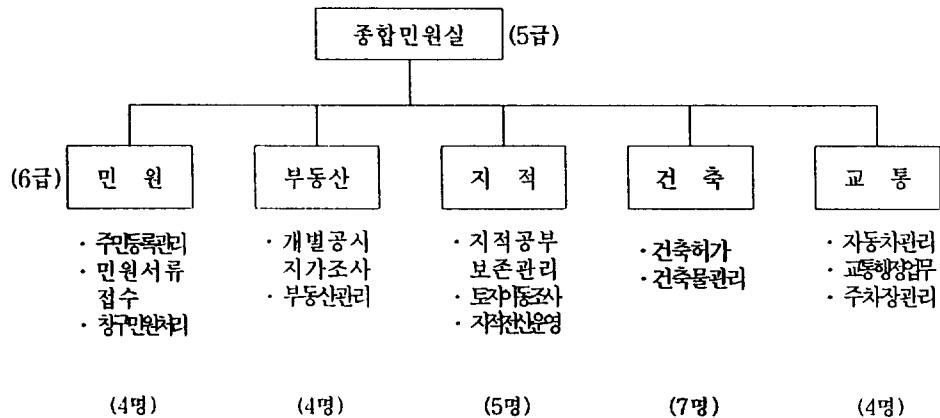
**<사례3> 고양시의 인허가기능을 일반구로 이관 구에 전담  
기구 설치 원스톱처리(고양시 일산구·덕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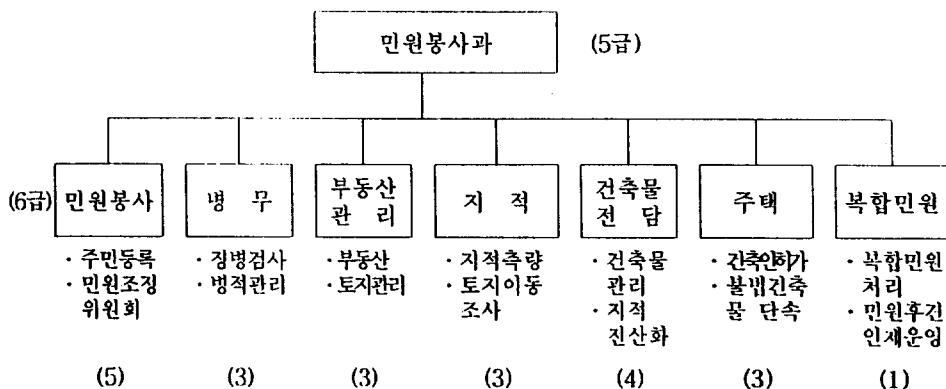
\* 구에서 모든 인허가 업무수행(단, 건축허가 5층미만 제외)

### <사례4> 일반민원실에서 인허가 기능부분 수행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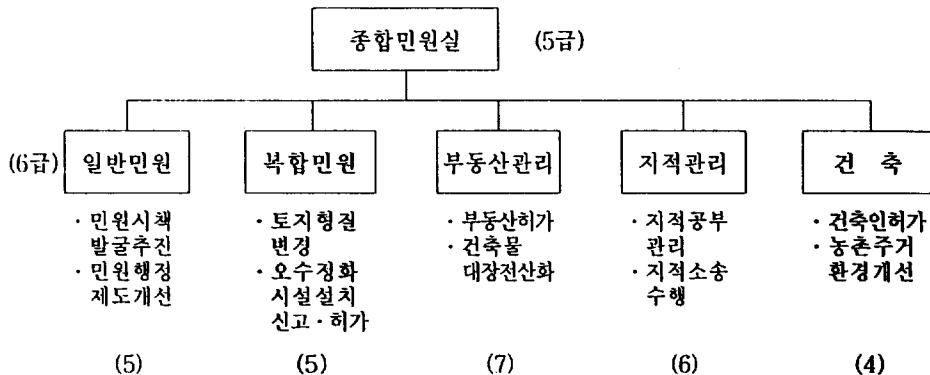
#### ① 단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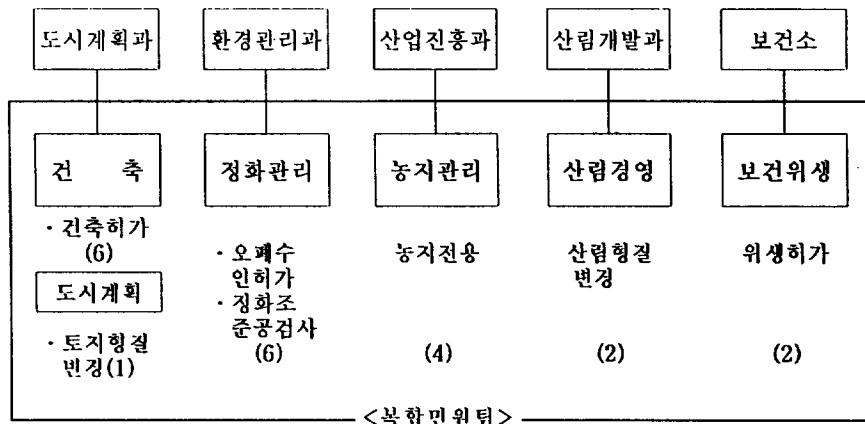
#### ② 곡성군



### ③ 예산군



<사례5> 5개 실과의 주요 인·허가 기능을 1개 사무실로 합동 배치 팀제운영(6급 팀은 각과의 소속 유지) – 양평군



## 【서식】

기구설치 및 정원조정 결과보고

## ① 유형별 기구설치 개요

- 전담과 설치 : ○개 시군구(○시, ○군, ○자치구, ○일반구)
- 기존민원실에 전담 기능 보강 : ○개 시군구(○시, ○군, ○자치구, ○일반구)

## ② 시군구별 기구·인력 조정전후

시군구명	개 편 전			개 편 후		
	과	담당	정원	과	담당(팀)	정원
○○시	○○과	○○담당	○명	○○과	○○담당	○명
	○○과	○○담당	○명		○○담당	○명
	○○과	○○담당	○명		○○담당	○명
○○시	○○과	○○담당	○명	○○과	○○담당	○명
	○○과	○○담당	○명		○○담당	○명
	○○과	○○담당	○명		○○담당	○명

## 市·郡의 認·許可 專擔機構設置 推進指針(要約)

< 그간의 추진경위 >

- '98. 10. 13 김포시의 허가과 설치, 경영혁신 우수사례 평가
- 2000. 3. 22 우리부 대통령 업무 보고서『許可課』 설치계획 보고

### □ 專擔機構設置 方案

- 전담기구(課)는 시·군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 정수범위 이내에서 기존의 다른課의 통폐합을 통해 설치
- 정원은 현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조정 추진 원칙 단, 직급별 기준이내에서 부분적 정원 상계조정 인정
  - 6급 팀장 정원의 경우 기존의 6급 무보직의 정원을 조정가능

### □ 우리道의 境遇

- 허가민원과 별도설치 市郡(과장 밑에 3~5담당, 12~20명)
  - 포항시 등 10개 市, 도시개발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 郡※ 칠곡, 성주, 청도, 고령, 군위군 해당
- 여타 郡지역 : 기존 민원봉사과 개편(일반민원+인·허가민원)
  - 기구 및 정원 : 일반민원 1~2팀, 인허가 2~4팀이내, 25명정도※ 민원봉사과 없는 郡 : 군위, 영양군

### □ 行政事項

- 시·군별 복합민원전담부서 설치결과 제출
  - 2000. 8월말까지 道가 종합보고
- 행정자치부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운영사례 평가
  - 2000. 10~12월중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43호
- 의 안 명 :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2. 제안이유

여러 부서에 분산수행 하여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기구설치 및 분장사무를 조정 및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과 개편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부시장직속 종합민원처리과
- 산업건설국 주택과 ⇒ 산업건설국 주택지적과

#### 나. 사무분장 조정

- 행정지원국 ⇒ 산업건설국
  -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 개별필지의 지가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공간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국 ⇒ 부시장 직속 (종합민원처리과)
  - 정집, 소집 및 예비군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증명 및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 호적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4. 검토의견

-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중 “보좌기관”을 “보조·보좌기관”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담당관실 다음에 종합민원처리과를 두도록 함.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부시장직속 종합민원처리과
  - 제5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에 민원봉사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9호, 제13호, 제14호 및 제20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27호중 “부녀”를 “여성”으로 하며
  - 제6조제1항중 산업건설국에 “주택과”를 “주택지적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29호중 “건축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련 인·허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항 제31호를 제35호로 하고, 제31호 내지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임.  
 ※ 산업건설국 주택과 ⇒ 산업건설국 주택지적과
  - 행정지원국 ⇒ 산업건설국 사무분장 조정
    - 제31호 :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제32호 : 개별필지의 지가관리에 관한 사항
    - 제33호 : 도시공간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 제34호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국 ⇒ 부시장직속(종합민원처리과) 사무분장 조정
    - 제9호 : 징집·소집 및 예비군 자원관리 관한 사항
    - 제20호 :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1호 : 제증명 및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 제22호 : 호적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지방자치가 본격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체계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 여러 부서에 분산수행 하여온 각종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부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11.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